

자료번호	A1-2006-0017
자 료 명	학교폭력의 효과적 개입방안 모색을 위한 욕구조사 : 교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예방 및 형사정책 관련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1989년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해주신 내용은 학교폭력의 개입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밀보장이 지켜집니다. 끝까지 읽고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 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본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범죄연구실 김은경 실장(연구위원)

☎ 137-140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3560-5160 : 3460-5141 ✉ E-mail : ekkim@kic.re.kr

※ 다음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선생님의 일반적인 생각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각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를 하시거나 응답을 적어 주십시오

문1] 최근 우리사회에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학교폭력” 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___ 1) 범죄 처벌문제 | ___ 2) 분쟁 조정문제 |
| ___ 3) 피해 보호문제 | ___ 4) 비행 교육문제 |
| ___ 5) 기타(_____) | |

문2]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요즘 발생하는 학교폭력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___ 1) 학생자신 | ___ 2) 학부모와 가정교육 |
| ___ 3) 학교교사 | ___ 4) 엄격한 학교 분위기 |
| ___ 5) 입시위주 교육제도 | ___ 6) 대중문화와 유해환경 |
| ___ 7) 사회문화전체 | ___ 8) 기타(_____) |

문3]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학교폭력 사건해결은 누가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___ 1) 당사자 간에 | ___ 2) 담당교사 차원에서 |
| ___ 3) 학교차원에서 | ___ 4) 관할교육청 차원에서 |
| ___ 5) 지역사회내 전문조정기관에서 | ___ 6) 사법제도를 통하여 |
| ___ 7) 기타(_____) | |

문4] 선생님이 판단하시기에, 현재 학교는 학교폭력 발생시, 사건을 공정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위기개입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그저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1).....(2).....(3).....	(4).....(5).....(6).....	(7)

※ 다음은 학교현장에서 폭력사안 처리현황 및 선생님의 경험에 대하여 몇 가지를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5] 최근 2년동안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폭력대책 자
치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 ___0) 폭력사안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적이 없다(☞ 문5-1]로 가 주십시오)
___1) 종래처럼 학교내부의 징계절차로 다루어졌다(☞ 문5-1]로 가 주십시오)
___2)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처리한 적이 있다(☞ 문6]으로 가 주십시오)

문5-1] 만일 최근 2년동안, 자치위원회가 한 차례도 개최된 적이 없었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6]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에는 현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회의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규정 및 실행지침서(또는 매뉴얼)를 마련하고 계십니까?

- ___0) 아니오 ___1) 예

문7] 선생님께서는 새로운 학교폭력법을 및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의의와 성격을
이해할 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 ___0) 전혀 없다.
___1) 상급기관으로부터 학교폭력 사안처리지침 공문을 통하여 접하였다.
___2) 회의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매뉴얼을 제공받았다.
___3) 효과적 실행을 위한 일정한 교육 연수를 받았다.

문8] 선생님께서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의의와 성격을 스스로 잘 이해하고 계신
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그저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1).....(2).....(3).....	(4).....(5).....(6).....	(7)

문9]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폭력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 2년간** 조치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행여부를 모두 표시해주세요.

학교폭력 관련 조치 시행여부	시행함	시행안함
1. 가해자 및 피해자 심리평가	①	②
2. 가해자 및 피해자 부모면담	①	②
3. 쌍방간 화해유도(비공식적 합의권고)	①	②
4. 선도위원회(또는 징계위원회) 개최	①	②
5. 자치위원회 개최	①	②
6. 분쟁조정회의(공식적인 피해배상 협의)	①	②
7. 가해자 징계(처벌조치)	①	②
8. 피해자 신변안전 및 보호조치	①	②
9. 교육청 보고	①	②
10. 의료기관 의뢰	①	②
11. 사법기관(경찰·검찰, 보호관찰소 등) 신고	①	②
12. 법률구조기관 의뢰	①	②
13. 지역사회 청소년관련기관 의뢰	①	②
14.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개입과 모니터링	①	②

문10]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에서, 폭력사안을 다룰 때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___ 1) 신고 및 관련기관 의뢰
- ___ 2) 사안조사 및 관련자 상담
- ___ 3) 분쟁조정 및 피해배상과 관련된 합의도출
- ___ 4) 피해자 보호조치
- ___ 5) 가해자 처벌조치
- ___ 6) 재발방지를 위한 추후 교육상담 및 모니터링

문11] 최근 2년동안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학교차원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조처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___ 0) 폭력사안이 발생한 적이 없다
- ___ 1)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 ___ 2) 심리상담
- ___ 3) 일시보호
- ___ 4) 치료요양(출석일수 산입)
- ___ 5) 학급교체
- ___ 6) 전학권고
- ___ 7) 기타: _____

문12] 앞서 질문11] 보기에 제시된 (2)~(6)의 조처들이 피해학생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그저 그렇다	매우 효과적임
(1).....	(2).....	(3).....
(4).....	(5).....	(6).....

문13] 최근 2년동안 가해학생 선도(처벌)를 위하여 학교차원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조처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3가지만 골라 우선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___ 0) 폭력사안이 발생한 적이 없다(☞ 다음 질문으로 가 주십시오)
- ___ 1) 특별한 처벌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다음 질문으로 가 주십시오)
- ___ 2)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 ___ 3) 피해자에 대한 접촉 및 협박금지
- ___ 4) 학급교체
- ___ 5) 전학
- ___ 6) 교내봉사
- ___ 7) 사회봉사
- ___ 8) 외부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___ 9) 출석정지
- ___ 10) 퇴학
- ___ 11) 기타: _____

문14] 앞서 질문13] 보기에 제시된 (2)~(10)의 조처들이 가해학생에게 책임을 느끼게 하고 선도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1).....(2).....(3).....(4).....(5)
 그저 그렇다 (3)
 매우 효과적임 (5)

문15] 선생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를 위하여 도입되어야 할 조처나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16] 선생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해학생을 실질적으로 선도하고 재발을 막기 위하여 도입되어야 할 조처나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17]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에서 폭력 사안을 다룰 때, 다음과 같은 절차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얼마나 주력하십니까?

	전혀 고려하지 않음	별로 고려하지 않음	보통 정도	대체로 주력함	매우 주력함
1. 사건해결과정에 당사자들의 주도적 참여	①	②	③	④	⑤
2. 가해자-피해자간의 화해 촉진	①	②	③	④	⑤
3. 상호 수용가능한 피해배상 계획의 협상	①	②	③	④	⑤
4. 가해자 책임의 자각과 사과기회의 제공	①	②	③	④	⑤
5. 피해자의 정서적 안전감 및 회복(치유) 초점	①	②	③	④	⑤
6. 사건처리의 공정성 확보	①	②	③	④	⑤
7. 향후재발 위험의 제거	①	②	③	④	⑤

문18] 다음은 현재 학교에서 폭력사안을 다루거나 개입을 할 때, 교사의 입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항목들이 실제로 효과적 개입을 얼마나 방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음	별로 문제되지 않음	보통 정도임	대체로 문제됨	매우 문제됨
1.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짓기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2. 피해학생 부모와 신뢰관계 형성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3. 가해학생 부모와 신뢰관계 형성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4. 인사고과상의 불이익 위험	①	②	③	④	⑤
5. 민사소송의 잠재적 당사자가 될 위험성	①	②	③	④	⑤
6. 분쟁조정 어려움(관련 지식 및 기술 한계)	①	②	③	④	⑤
7. 아이들 심리진단(위험성 평가)의 어려움 (관련 지식 및 기술의 한계)	①	②	③	④	⑤
8. 실질적인 피해자 안전조치의 부재	①	②	③	④	⑤
9.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치의 비효과성	①	②	③	④	⑤
10. 외부압력으로 인한 중립성·공정성 훼손 위험	①	②	③	④	⑤

문19]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교사의 입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든다면 무엇입니까?

문20] 선생님께서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___0) 아니오 (☞ 다음 페이지 문21]로 가 주십시오)

___1) 예

☞ 문20]에서 ‘예’라고 응답하신 분에 한해서만 다음의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만일 여러 번 참여하였다면, 그 가운데 폭력피해 정도가 가장 심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행자는 회의의 의의를 설명하고, 참여자들과 함께 회의진행을 위한 기본규칙을 정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교사와 자치위원들은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을 공정하게 대우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피해학생은 자신의 느낌과 상처, 실제 피해영향을 직접 표현할 기회를 가졌다.	①	②	③	④	⑤
4. 가해학생은 자신의 견해와 입장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	①	②	③	④	⑤
5. 관련 학부모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실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다.	①	②	③	④	⑤
6. 회의과정에서는 피해자측(부모)와 가해자측(부모)가 직접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7. 회의 의사결정은 자치위원들의 견해와 제안들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8. 회의는 금전적 배상문제를 주요하게 다루었다.	①	②	③	④	⑤
9. 회의는 가해학생의 처벌문제를 주요하게 다루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회의는 피해학생의 치료 및 보호문제를 주요하게 다루었다.	①	②	③	④	⑤
11. 회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서적 화해 및 향후 관계의 회복문제를 주요하게 다루었다.	①	②	③	④	⑤
12. 가해학생은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3. 피해학생(부모)은 회의결과에 만족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4. 회의의 최종결과로서,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분쟁해결을 위한 최종 합의문서를 작성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5. 회의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문23]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고 분쟁을 조정하는데, **공식적인 사법절차에 비하여** 얼마나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유용하지
못하다**
 (1).....(2).....(3).....(4).....(5)

**그저
그렇다**

**매우
유용하다**

문23-1] 만일 문23]에서 (1) (2)에 답하신 경우, 어떤 측면에서 자치위원회가 사법절차보다 유용하지 않다(또는 유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3-2] 만일 문23]에서 (4) (5)에 답하신 경우, 어떤 측면에서 자치위원회가 사법절차보다 유용하다(또는 유용할 것이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4] 학교현장에서 폭력사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제도절차에 도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치 않다	중요치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1. 사건해결과정에 당사자 참여권과 진술권 보장	①	②	③	④	⑤
2. 피해자-가해자간의 대화과정(화해의 촉진)	①	②	③	④	⑤
3. 전문적 조정제도(또는 화해중재센터)의 도입	①	②	③	④	⑤
4. 자치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한 실행매뉴얼	①	②	③	④	⑤
5. 관련기관과의 협력연계망 제도화	①	②	③	④	⑤
6. 학교별 학교폭력 보험제도의 확충 (소송대비 및 피해자보호조치 등을 위한....)	①	②	③	④	⑤

문25] 학교현장에서, 폭력사건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또는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D1] 선생님께서 재직하고 계신 학교급은?

- ____ 1) 초등학교 ____ 2) 중학교
____ 3) 일반고 ____ 4) 실업고
____ 5) 기타(_____)

D2]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계신 학년과 직위는?

- D2-1 학급담임여부: ____ 1) 담임 (____ 학년) ____ 2) 비담임
■ D2-2 직위 : ____ 1) 교장 ____ 2) 교감 ____ 3) 부장교사 ____ 4) 평교사

D3] 선생님의 성별은?

- ____ 1) 남자 ____ 2) 여자

D4] 선생님의 교직 경력은?

- ____ 1) 5년미만 ____ 2) 5-10년미만
____ 3) 10-15년미만 ____ 4) 15-20년미만
____ 5) 20-25년미만 ____ 6) 25-30년미만
____ 7) 30년이상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